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37

발의연월일: 2020. 10. 7.

발 의 자:정운천・김선교・이종성

윤주경 • 서일준 • 권성동

한기호 • 이철규 • 유창현

권명호 · 홍문표 · 김영식

김은혜 · 김형동 의원

(14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신규원전 백지화, 월성 1호기조기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한편,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기술·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자로 수출전략지구를 지정하는 등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호 및 제 9조제2항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원자로 수출전략지구 지정 등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4조(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u>관한 사항</u>
<u>8.</u> (생 략)	<u>9.</u> (현행 제8호와 같음)
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	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
립) ① (생 략)	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원자로 수출전략지구 지정
	등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
	<u>에 관한 사항</u>
<u>5.</u> (생 략)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